

COVID -19 Newsletter

April 16, 2020

COVID-19: 계약상 ‘불가항력’ 사유 해당 여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COVID-19”)의 급속한 확산은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실물경제의 침체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를 불러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 또는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 각 국가에서의 입국 제한으로 인한 인적 교류의 어려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재택근무가 가져오는 새로운 업무 형태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등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특히 많은 기업들이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가 계약상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불가항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불가항력에 대해서는 민법과 상법에서는 일부 조문에서 “불가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가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불가항력”에 해당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해석에 맡겨져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의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이른바 IMF 사태 및 그로 인한 자재 수급의 차질 등은 그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없고,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례적인 강우가 아니라면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참조), 불가항력의 인정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부품 조달 지연으로 인해 전기기관차 공급계약에 따른 납품이 지연된 사안에서,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가 일본 산업에 타격을 주었을 수는 있지만, 부품 조달 지연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불가항력을 부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4다233480 판결).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을 고려하면, 법원은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대원칙 하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어느 정도의 사정 변경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각 계약의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단순히 계약의 이행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불가항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당사자가 ‘해당 사유의 발생을 예견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이를 회피할 수 없었으면서, 해당 사유가 채무의 불이행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가지는 아주 제한적인 경우로 한정’하여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COVID-19로 인한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과 불확실성의 극대화가 전례가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이 COVID-19와 관련하여 불가항력을 기존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인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 실제 계약 관계에의 적용

법원에서 불가항력에 대한 판단 기준을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계약에서 특정한 사정을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불가항력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COVID-19가 계약의 해석 상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다른 불가항력 사유로 보거나, 또는 다른 논리를 주장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각각의 경우를 나누어서 검토를 하여 보겠습니다.

(1) 계약에서 불가항력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계약에서 COVID-19를 불가항력 사유로 명시하였다면 COVID-19로 인한 영향이 계약의 해석 상 불가항력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 체결하는 계약에서는 이와 같이 COVID-19를 불가항력 사유로 명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서는 당연히 COVID-19를 불가항력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염병의 창궐”을 불가항력 사유로 포함하고 있다면 COVID-19가 계약상 “전염병의 창궐”에 해당하는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2020. 2. 28.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COVID-19 대응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COVID-19가 전염병의 창궐로 인한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COVID-19가 미치는 영향, 그러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노력 등 계약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위의 유권해석만을 근거로 COVID-19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전염병의 창궐”로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 이행의 불가

계약에 따라서는 불가항력 사유로 법령의 규정 또는 정부기관의 (구속력 있는) 명령에 따른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하지 못한 것이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한 날짜에 물건을 납품하여야 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납품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시적 폐쇄 조치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물건을 납품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법령에 따른 정부기관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그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 또는 정부기관의 명령을 따름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정은 없는지, 그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였는지 등의 제반 사정에 따라서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역시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출입자에 대하여 체온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고열을 동반한 확진자가 사업장에 출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확진자가 사업장에 발생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한 사업장 폐쇄에 대해 불가항력 사유의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천재지변 해당 여부

불가항력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천재지변, 전쟁, 폭동 기타 당사자가 통제 불가능한 책임 없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COVID-19와 관련하여서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태풍, 홍수, 호우, 지진, 조류 대발생, 화산활동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자연재난”으로 분류하고, 감염병의 확산은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자연재난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천재지변”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자연재난과 구분되어 사회재난으로 정의되고 있는 감염병의 확산은 천재지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기타 당사자가 통제 불가능한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문제가 되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법원이 불가항력 사유 해당여부를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증 부담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COVID-19가 “통제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COVID-19로 인한 업황 부진이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계약 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에서 불가항력 사유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의 당사자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 또는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정이 변경된 것이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여야 하고, 그러한 변경에 대하여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 영향이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지속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정변경의 원칙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위 동일본 대지진 관련 사건에서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지체상금과 관련하여서는 지체의 사유를 고려하여 지체상금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COVID-19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류명현
선임외국변호사

☎ 02-316-4276

✉ mhryu@shinkim.com



조종일
파트너변호사

☎ 02-316-2117

✉ cicho@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